거거덩협동조합

〈조합원 자격 규약〉 2024 년 3 월 12 일 제정

제 1 조(목적)

조합원의 자격은 정관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조합 가입에 제약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조합원의 자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"조합원"이라 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좌 이상의 출자를 한 자를 말한다.

제 4 조(조합원의 자격)

-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.
- ②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(예술) 생음악에 대한 애정
 - 2. (인류) 다양성에 대한 존중
 - 3. (지구) 생태계의 건강에 대한 관심
 - 4. (협의) 건전한 토론 태도
 - 5. (협동) 음악도시 창조를 위한 노력

제 5 조(가입)

-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.
 - 1.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계좌번호
 - 2. 출자좌수
 - 3.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
-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, 사업계획서,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.
 - 1. 법인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주된 사무소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- 2. 구성원 수
 - 3. 출자좌 수
 - 4. 주된 사업의 종류
 - 5.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
- ③ 가입신청자는 제 1 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,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.

제 6 조(출자증서의 교부)

- ① 조합은 출자금을 납입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출자증서와 함께 탈퇴 시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 2(출자증서 내용)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
- 1. 협동조합의 명칭
- 2.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- 3. 증서번호
- 4. 발행 연월일
- 5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
- 6.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

제 7조(출자금 차등 납입) 다음 각 호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가입할 때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하다.

- 1. 생산자조합원 : 3 좌 이상 출자
- 2. 소비자조합원: 1 좌 이상 출자
- 3. 직원조합원 : 1 좌 이상 출자
- 4. 자원봉사자조합원 : 1 좌 이상 출자
- 5. 후원자조합원: 1 좌 이상 출자

제 8 조(기타 가입에 관한 사항)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